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나. 변경시행일 : 2021년 1월 12일(화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
라. 주요 변경 내용 :
1) 펀드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2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2등급)
3) Class S-R 수익증권 신설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[표지] ▣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코드(종류형 포함)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[DE956]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[DE956]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<신 설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[DE956]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 설>	1)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2등급) 3) Class S-R 수익증권 신설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"가. 책임운용전문인력"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"가.투자대상"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①(생략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생략)~ 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①(현행과 같음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생략)~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

	③~⑭(생략)	③~⑭(현행과 같음)
10.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"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"	투자위험등급: 3등급(다소높은위험) 수익률 변동성 : 13.0846%	투자위험등급 : 2등급(높은위험) 수익률 변동성 : 20.8114%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"가.매입", "(2)종류별 가입자격"	〈신 설〉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"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", "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"	〈신 설〉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-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 -후취판매수수료 : 없음 -환매수수료 : 없음 -전환수수료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"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"	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〈신 설〉 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〈신 설〉 (2)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(1)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-집합투자업자보수 : 연 0.6500 -판매회사보수 : 연 0.2300 -신탁업자보수 : 연 0.0300 -사무관리회사보수 : 연 0.0200 -총보수 : 연 0.9300 [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 (예시)]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형(S-R) (2)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"가.이익배분","(2)상환금 등의 지급"	-(생략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-(현행과 같음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실적 및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,"가.수익자총회등","(5)투자신탁의 합병"	①~④ 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'④'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	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집합투자업자는 '④'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
2.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,"나.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"	①(생략)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~(생략)~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(fund.eugenefn.com)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	①(현행과 같음)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~(생략)~ 유진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(fund.eugenefn.com)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(www.kofia.or.kr)에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, "가. 정기보고서","(3)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"	(1)(생략) (2)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~(생략)~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(이하생략) (3)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~(생략)~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이하 생략)	(1)(현행과 같음) (2)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~(생략)~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(이하생략) (3)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~(현행과 같음)~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(이하 현행과 같음)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(생략) ③ 1~14.(생략) <신 설>	① (현행과 같음) ③1~14.(현행과 같음) 15. Class S-R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 ②(생략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종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 ②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<신 설> ②~⑤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5. Class S-R 수익증권 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(생략)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

	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(생략)	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⑦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①(생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~④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~④(현행과 같음)
제25조(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	①(생략) 1~14(생략) <신 설> ②~③(생략)	①(현행과 같음) 1~14(현행과 같음) 15. Class S-R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②~③(현행과 같음)
제28조(환매연기)	①~⑦(생략) ⑧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.	①~⑦(생략) ⑧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	①~②(생략)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39조(보수)	①,②(생략) ③1~14 (생략) <신 설>	①,②(현행과 같음) ③1~14 (현행과 같음) 15. Class S-R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6.5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2.3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.30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
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(생략) <신 설>	①~③(현행과 같음)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 · 신탁계약 ·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 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⑥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7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~③ (생략)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	①~③(현행과 같음)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
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~⑥(생략)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	①~⑥(현행과 같음)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

	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	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(이하 현행과 같음)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~(이하 생략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~(이하 현행과 같음)